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1084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임지혜, 정진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지안나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윤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 C, D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5. 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30,857,50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E는 원고에게 30,857,509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에게 2002. 9. 18. 500만 원, 2009. 12. 18. 1,000만 원, 2012. 12. 3. 5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F를 상대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7681호로 'F는 원고에게 21,007,262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11.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G(피고 B, C, D와 F의 모친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B, C, D와 F는 그 무렵 망인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F를 제외하고 피고 B, C, D가 각 1/3 지분씩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B, C, D은 2021. 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 C, D은 2021.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F의 아들이자 피고 B, C, D의 조카이다)에게 2021. 2. 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천안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천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F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H 신용조회(2021. 3. 23.자 기준)에 의하면 F는 아래와 같은 채무가 있다.

발생기관	연체발생일	연체금액(원)
A	2016.03.02.	5,000,000
A	2016.03.02.	10,000,000
I	2016.01.20.	96,985,000
J	2016.01.20.	96,985,000
A	2015.12.21.	5,000,000
경기신용보증	2015.11.06.	8,544,000
K	2015.08.05.	1,000
L	2015.04.30.	4,699,000
M	2015.04.28.	16,194,000
M	2015.04.28.	9,000,000
N	2015.04.27.	3,996,000
N	2015.04.27.	5,997,000
합 계		262,401,000

3) 이러한 법리와 F의 위와 같은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보면, F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 B, C, D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F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F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 C, D과 전득자인 피고 E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는데, F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F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B, C, D과 F는 F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F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고 피고 B, C, D은 E의 망인에 대한 부양 공로를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일 뿐이므로 사해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①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재산

망인의 자녀들인 F와 피고 B, C, D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천안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천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감정인 O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유일한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은 200,954,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② F의 특별수익

을 제6,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생전에 F로 하여금 망인 명의로 개설한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한도가 -4,0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이다)의 돈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금액을 수시로 변제하여 주어 F에게 합계 193,321,710원(= 아래 191,692,445원 + 아래 1,629,265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위 돈을 특별수익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들은 아래 39,836,544원도 F가 특별수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망인의 변제금과 중복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망인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3. 11. 29. 개업한 P를 2015. 1. 20. 폐업하는 등 사업에 실패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던 F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계좌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F 또는 F의 전처 Q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위 계좌를 주로 사용하였다.

㉡ F는 2013. 8. 17.까지 위 계좌에서 -39,836,544원의 돈을 사용하였다.

㉢ 망인은 2013. 8. 20. 39,931,565원을 입금하여 위 돈을 변제하였다.

㉣ 망인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39,931,565원을 포함하여 2019. 4. 26.까지 합계 191,692,445원의 돈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F가 위 계좌에서 사용한 돈을 수시로 변제하였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1,629,265원인데 이 또한 망인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으로 변제되었다.

피고들은 망인이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F에게 지급하여 2004. 4. 26.부터 2004. 5. 4. 사이에 합계 6,4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F의 구체적 상속분

가)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200,954,200원 + F 특별수익 193,321,710원 = 394,275,910원

나) F의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 98,568,977원(= 위 394,275,910원 × 상속지분 1/4, 원 미만은 버림) - F의 특별수익 193,321,710원 = - 94,752,733원

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정상속분액 98,568,977원보다 특별수익액인 193,321,710원이 더

크므로 F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다.

4) 소결

결국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F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F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F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F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

별 지 목 록

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 88 m²
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 97 m²
3.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 2층 주택
 - 1층 83.76 m²
 - 2층 61.29 m²
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도로 56 m²

거래일자	입금액	상대예금주	비고
2013-08-20	39,931,565		
2016-08-23	6,500,000		
2017-03-20	10,000,000		
2017-03-21	10,000,000		
2017-03-22	5,000,000		
2017-03-29	910,000		
2017-08-25	500,000		
2017-08-31	6,000,000		
2017-08-31	6,000,000		
2017-08-31	6,000,000		
2017-08-31	1,500,000		
2017-11-13	1,300,000		
2017-11-16	200,000		
2017-11-22	1,000,000		
2017-11-30	1,000,000		
2018-02-22	4,100,000		
2018-03-14	500,000		
2018-04-04	665,000		
2018-04-11	800,000		
2018-05-02	500,000		
2018-05-09	2,500,000		
2018-06-03	500,000		
2018-06-05	918,650		
2018-06-11	600,000		
2018-06-12	2,750,000		
2018-06-12	100,000		
2018-07-02	918,650		
2018-07-10	2,400,000		
2018-08-03	860,000		
2018-08-10	3,000,000		
2018-09-10	2,872,930		
2018-09-10	918,650		
2018-09-10	210,000		
2018-09-13	1,510,000		
2018-09-19	100,000		

2018-10-12	2,698,000			
2018-10-30	2,060,000			
2018-11-13	2,620,000			
2018-11-29	100,000			
2018-12-04	1,500,000			
2018-12-20	1,100,000			
2018-12-23	1,990,000			
2019-01-01	2,000,000			
2019-01-15	730,000			
2019-01-20	1,500,000			
2019-02-01	1,980,000			
2019-02-11	2,000,000			
2019-03-05	500,000			
2019-03-11	3,170,000			
2019-04-02	300,000			
2019-04-02	2,500,000			
2019-04-04	2,000,000			
2019-04-11	2,130,000			
2019-04-16	400,000			
2019-04-19	2,000,000			
2019-04-19	2,000,000			
2019-04-19	2,000,000			
2019-04-23	1,990,000			
2019-04-23	1,990,000			
2019-04-23	1,990,000			
2019-04-23	1,990,000			
2019-04-23	1,990,000			
2019-04-24	1,990,000			
2019-04-24	1,990,000			
2019-04-24	1,990,000			
2019-04-24	1,990,000			
2019-04-24	1,990,000			
2019-04-24	1,990,000			
2019-04-25	1,990,000			
2019-04-25	1,990,000			

* ()는 ()라는 모바일병행 어플 운영 업체입니다. 이는 () 어플을 통해서 ()
계좌에서 이 마이네스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19-04-25	1,990,000			
2019-04-25	1,990,000			
2019-04-25	1,990,000			
2019-04-26	1,990,000			
합계	91,692,445			

